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원한 주재관 한시정원 10명(경감 2명, 경위 4명, 경사 4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6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그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전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감사관의 1개 담당관과 재외동포영사실의 1개 센터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8. ~ 2.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다.

별표 5의2 제1호1) 및 2)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호3)부터 12)까지를 각각 1)부터 10)까지로 한다.

별표 5의3을 삭제한다.

별표 7 제2호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6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대한민국재외공관 한시 정원표(제63조제5항 관련)

총계	1
외무공무원 계	1
8등급 이하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한시정원) ① (생 략)	제63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공관 안전 및 외교관 신변보 호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 항에 따라 <u>2023년 2월 28일</u> 까지 별표 7에 따른 주재관 한시정원 을 공관에 둔다.	② ----- ----- ----- ----- <u>2026년 2월 28일</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2030 부산세계박람회 대외 유치교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 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외교부에 둔다.	④ ----- ----- ----- ----- ----- ----- -----.
<u><신 설></u>	⑤ <u>공관의 관할구역의 사건 · 사 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 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9 에 따른 한시정원을 공관에 둔 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7